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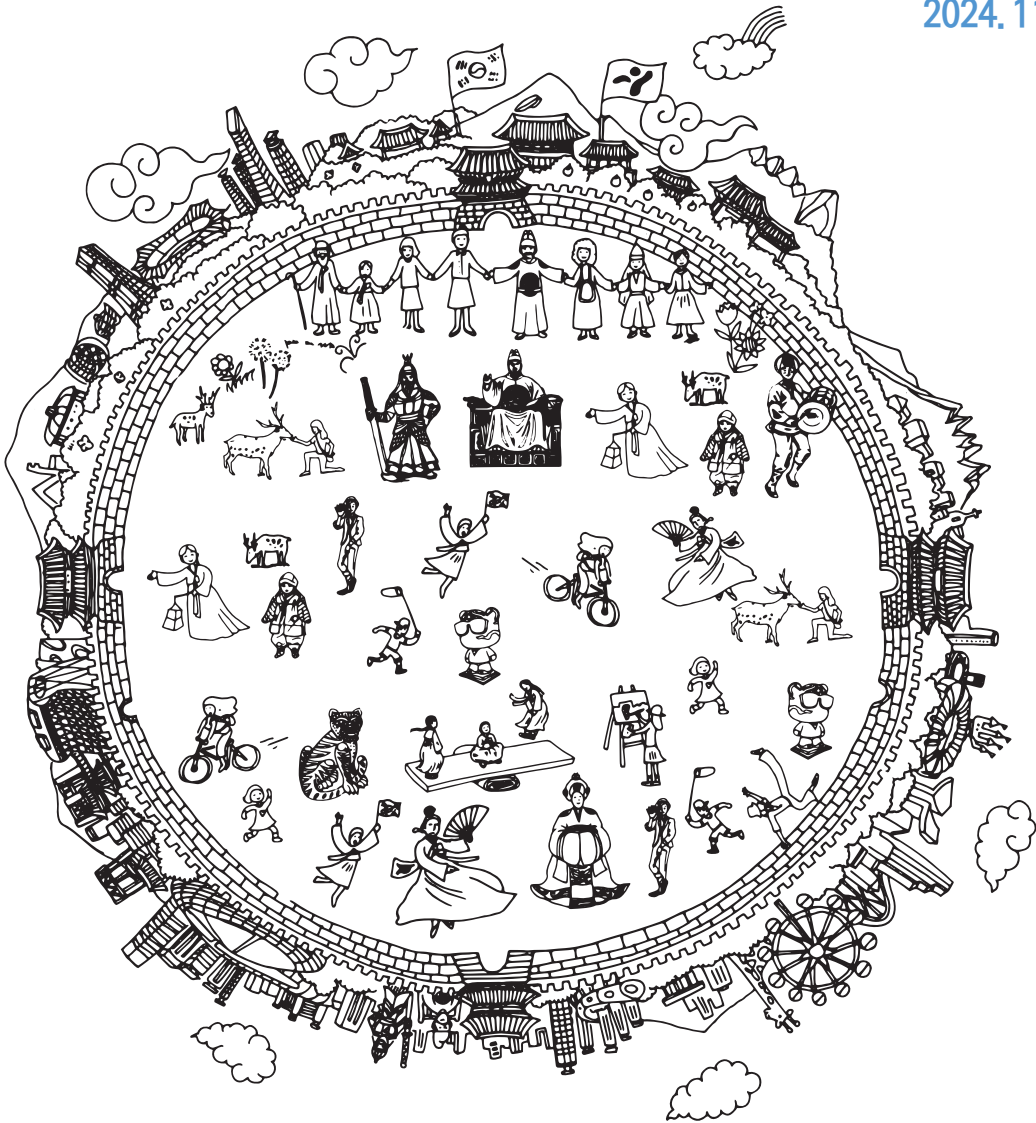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19호
2024. 11. 6.(수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입법예고]

제2024-3063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자치법규 등**[입법예고]****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3063호****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

1. 개정이유

현장중심 문제 해결력 및 시민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민원담당관신설 및 정책지원담당관 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장민원담당관 신설(안 제10조)
- 나. 정책지원담당관 폐지 및 기타 사무 이관·정비(안 제3조~9조)
- 다.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(안 제3조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기획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(전화: 02-2133-66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내용

- (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이메일 · 등기우편 · 온라인

- (1) E-mail : ysk5881@seoul.go.kr

(2) 전 화 : (02) 2133 - 6632

(3) 우 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

(4) 온라인 :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

※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규칙 제 호

이 규칙의 개정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정책지원담당관·인사담당관을 두며”를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인사담당관·현장민원담당관을 두며”로 “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”를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인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제담당관·정책지원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4호 중 “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”을 “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,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8호를 제15호로 한다.

제6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8. 전산실·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9.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20.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
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현장민원담당관) 현장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원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각종 민원의 접수·처리 및 이첩에 관한 사항
4. U-신문고(의회신문고) 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5.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

6. 민원처리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7. 민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8.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하부조직)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<u>의정담당관 · 언론홍보실장 · 의사담당관 · 법제담당관 · 재정분석담당관 · 정책지원담당관 · 인사담당관</u> 을 두며, <u>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</u>	제3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<u>의정담당관 · 언론홍보실장 · 의사담당관 · 법제담당관 · 재정분석담당관 · 인사담당관 · 현장민원담당관</u> 을 두며, <u>의정담당관 · 언론홍보실장 · 의사담당관 · 법제담당관 · 재정분석담당관 · 인사담당관</u> 은 <u>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</u>
② 제1항의 <u>법제담당관 · 정책지원담당관</u> 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	② ----- <u>법제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의정담당관) <u>의정담당관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	제4조(의정담당관)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	14. <u>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</u> ----- -----
15. <u>전산실 ·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16. <u>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</u>	<삭 제>

관리에 관한 사항

17.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
사항

18. (생 략)

제6조(의사담당관) 의사담당관은
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~ 16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법제담당관) 법제담당관은
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~ 11. (생 략)

<신 설>

제9조(정책지원담당관) 정책지원담
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
장한다.

1.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
관한 사항

2.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
한 사항

<삭 제>

15. (현행 제18호와 같음)

제6조(의사담당관) -----
-----.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
지원에 관한 사항

18. 전산실·정보통신망 운영 및
관리에 관한 사항

19.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
관리에 관한 사항

20.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
사항

제7조(법제담당관) 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
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3.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4.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5.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

6. U-신문고(의회신문고) 등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·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7.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과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

8.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9.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

10.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0조 (생략)

<신설>

제9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0조(현장민원담당관) 현장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민원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

제11조(전문위원)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다만, 제6호의 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해당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선에 관한 사항

3. 각종 민원의 접수·처리 및 이첩에 관한 사항

4. U-신문고(의회신문고) 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
5.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

6. 민원처리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민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
8.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(전문위원) -----

-----.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